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7일, 김선교 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봇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음.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려 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IT·B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로봇 활용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서빙·조리·배달로봇 등을 포함함.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푸드테크 관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연 38% 성장하는 등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미국·EU 등은 푸드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

반면, 국가차원에서의 푸드테크산업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종합적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3개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인력육성 등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현행 「식품산업 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 관련 예산 역시 같은 법을 근거로 2024년도 기준 6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푸드테크산업 육성정책이 2022년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식품소재’ 분야에 있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푸드테크산업과 기존 식품산업과의 뚜렷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푸드테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유업무라고 하기에 그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